

2024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기획사·제작사(펠로우십 지원단체) 공모
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 뮤지컬 업계의 예비인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뮤지컬 프로듀서를 발굴하여, 한국 뮤지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'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' 사업을 진행합니다. 뮤지컬 기획·제작사 등이 보유한 전문 인력의 펠로우십을 통한 현장 실습을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뮤지컬 예비인력을 육성하고자 하오니, 펠로우십 지원 인력을 보유한 뮤지컬 기획·제작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※ 펠로우십(Fellowship)이란?

사전적 의미는 친교, 교우, 유대관계 등을 뜻하며 선배 전문가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 실무교육, 후배 지도 및 예비 전문인을 이끌어내는 교육 프로그램 형태

1. 사업개요

- 프로그램명 :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
- 사업기간 : 2024년 1월 ~ 12월 (예정)
- 참가대상 : 뮤지컬 기획사·제작사 및 뮤지컬 예비인력 희망자
- 사업내용 : 기존 뮤지컬 기획·제작사의 펠로우십 지원을 통한 뮤지컬 업계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

2. 공모개요

- 공모명 : 2024 뮤지컬 예비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
- 기획사·제작사(펠로우십 지원단체) 공모
- 선정대상 : 뮤지컬 기획사·제작사
- 선정규모 : 9개 단체 내외
- 지원내용 : 예비인력 실습 인건비 및 펠로우십 인력 지원(2인)에 따른 사업주 소요비용
- 프로그램 구성
 - 예비인력 사전교육 및 펠로우십 단체소개
 - 예비인력 현장 파견 실습 및 워크숍

* 일정 및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3. 추진절차

단계	공모 및 심사	펠로우십 선정	사전교육/단체소개	매칭면접/현장파견	워크숍
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모/접수: 1월 1~3주 서류심사: 1월 3~4주 (예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류 심사 결과 발표: 1월 4주 (예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비인력 사전 교육 및 펠로우십 단체 소개: 2월 4주 ~ 3월 2주 (3주, 예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칭면접: 3월 2주~3월 4주(예정) 현장파견 실습: 4월 1주~12월 4주 (9개월, 예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워크숍: 12월 4주 (예정)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나라도움 접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펠로우십 지원 단체 9개 내외 선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비인력 사전교육 펠로우십 단체 소개 및 질의응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칭 면접을 통한 최종 배치 실습 모니터링 펠로우십 현장 실습 지도/보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펠로우십 성과 및 경험 공유 지원금 정산

* 일정 및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4. 지원가능 대상

신청대상	<p>뮤지컬 작품을 상연('24년 4월 ~ '24년 12월 중)하며 펠로우십 지원 인력 2인을 보유한 뮤지컬 기획사 및 제작사</p> <p>* 교육 기간 중 펠로우십의 소속 단체 소개 및 질의응답 진행 예정</p>
자격요건	<p>- '24년 4월 ~ '24년 12월 내 뮤지컬 상연 예정</p> <p>-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펠로우십 2인 이상 보유</p> <p>- 펠로우십 자격요건 : 제작사/기획사 정규 인력으로서, 뮤지컬 업계 경력 4년 이상 보유하고, 뮤지컬 5개 작품(재공연, 투어공연 무관) 이상 수행 경험 필수</p> <p>* 펠로우십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사업 중복 수혜 불가</p>
실습가능분야	<p>뮤지컬 기획 및 제작 인력, 펀드레이저, 프로모터, PR/마케터, 부가상품(MD) 등</p>
신청불가능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예술인복지법' 제6조2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기획재정부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 제31조2(보조사업 수행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의 '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' 제7조(보조사업 선정기준), 제10조(보조금 교부조건) 제1항 제1호 바~사목에 해당하는 단체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등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직 국·공립 예술단체 및 기관 (지자체 문화재단 포함) 학교(초·중·고·대학생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아마추어 단체사업 포함) 학교, 학원, 종교기관,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

5. 지원내용

지원금	최대 5,580만원 * 예비인력 실습에 대한 펠로우십 지원금(100만원/인) 1대1 매칭 지원				
지원금 사용항목	- 예비인력(2인) 인건비 (1인당 210만원/월, 4대보험료 포함) - 펠로우십 지원(2인)에 따른 사업주 소요비용 (1인당 100만원/월) - 사용가능항목				
	목	세목	세부항목	내역	비고
	인건비(110)	상용임금(03)	상용직 보수	상용직 급여	예비인력 인건비 (4대보험료 포함)
	운영비(210)	일반수용비(01)	소모품비	사무용품구입비	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사무용품, 도서/자료 구입, 인쇄/제작 비용
			도서인쇄비	도서 및 자료구입비 인쇄제작비	
			지급수수료	사용수수료	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상용프로그램 구독/이용료 등
			행사부대비용	행사부대비용	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타 제작사 공연 관람 비용
		임차료(07)	임차료	사무기기임차료	예비인력 현장실습 관련 사무기기 임차비용
여비(220)	국내여비(01)	관내여비	관내여비	예비인력 출장 시, 관내/관외(왕복120km기준)여비 (공무원 여비규정 준수)	
		관외여비	관외여비		
민간이전(320)	고용부담금(09)	상용직 4대보험지급경비	4대보험지급경비	예비인력 4대보험료 펠로우십 지원단체 부담금	
자부담 항목	예비인력과 상호 합의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관련 노무비 일체 * 주간 근로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유연근무 적용 시에도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.				
차년도 연속지원	'24년 사업 종료 시점 상호 희망 및 적격 심사를 통한 차년도 연속 지원(2개년) 선발. * 단 예산은 연도별 집행·관리하며, '23년도 연장 단체의 경우 3개년 지원 불가				

6. 신청방법

접수기간	2024년 1월 3일 수요일부터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16:00까지 (기한엄수)
제출방법	이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*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,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 ** 접수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접수 완료 바람
필수제출 자료	1. 공모 신청서 1부 (지정서식 및 붙임파일) 붙임1. 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 붙임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붙임3.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(법인의 경우,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함께 제출) 3. 펠로우십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.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확인서 1부 ('24년 4월 ~ '24년 12월 중)

7. 예비인력 실습 파견 근무여건

구분	내용
예비인력 근무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습기간 : 2024년 4월 1일 ~ 12월 31일 (예정) - 각 기획사/제작사 당 예비인력 2인 1개조 파견 - 표준근로계약 체결 (업무 내용 및 시간, 장소 명기 필수) - 예비인력 사전 교육 및 워크숍 참여 보장 - 예비인력 인건비(210만원/월, 4대보험료 포함) 지급 - 예비인력 주간 업무보고(지정서식) 예술경영지원센터 측 제출 - 주 40시간 근무 (공연 준비 및 상연 기간 중 유연근무 가능) - 사업 종료 후 예비인력 경력증명서 발급
기획/제작사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준근로계약 체결 (업무 내용 및 시간, 장소 명기 필수) - 펠로우십 월간 업무보고(지정서식) 예술경영지원센터 측 제출 -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준수 (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부여) - 상호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가능 (연장근로 관련 추가 노무비 등은 자부담 집행) - 연장 근로 시간은 유연근무 적용 시에도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. -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성 교부사업 중복지원 불가 -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및 회계 검증, 집행 정산 등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준수 - 해당 사업장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휴가(휴직) 및 휴게시간 등을 대체하는 목적 운영 금지 - 할당 업무의 수시 변경 혹은 관계없는 업무 종사 금지 -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 최대한 배제 * 단, 실습 목적 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상해보험 가입 필수 - 성희롱·성폭력,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/감독 철저

8. 심사 및 결과발표

서류심사	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격여부 등 행정검토 - 뮤지컬 관련 전문가의 서류심사
	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펠로우십 인원의 예비인력 실습 지도 적정성 - 예비인력 현장 파견 실습 계획 충실성 등 * 심사계획 시 세부지표는 변경가능
결과발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년 1월 4주 (예정) 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 담당자 개별 안내

9. 참고사항

- 선정 이후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
-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10. 안내 및 문의 (월~금 10:00~16:00, 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)
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공연예술유통팀
 - 전 화 : 02-708-2278
 - 이메일 : musical@gokams.or.kr